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7. 12.

행 정 위 원 회

200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7. 11. 21(수) ~ 11. 27(화)

3. 감사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창의혁신단,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보건소 소관)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김중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7. 11. 21 ~ 2007. 11. 26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창의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행 정 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확인 -개별감사 -현장확인
2007. 11.27	오전 오후	수감사항 정리 공개질의, 답변	- 각 위원별 - 강평

※ 토,일요일 : 지역 의정활동 등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참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07. 11.22 (목)	박남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미달된 업소들이 모범음식점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일제히 재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미달된 업소는 모범 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2	“	박남오	새마을 문고에 대한 관리가 교육지원담당관 및 주민자치과로 이원화 되어 관리를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대부분 각동 새마을문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24개 타 구청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 새마을문고 관리 및 운영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3	“	김기중	행정지원과의 경우 청소과를 제외한 부서 에 대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다음부터는 청소과도 포함시켜 입찰토록 하고 보건소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동일 차량에 비하여 보험료가 16만원이상 더 발생됨	2008년도부터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시는 가급적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쟁입찰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11.23 (금)	김기중	연2회 시비 지원으로 재래시장 (설,추석)홍보 이벤트가 있으나 이벤트 진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중간 정산문제 등 철저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가 없었음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회의 사업계획서 접수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것 이며, 정산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5	11.26 (월)	김기중	<p>일부 공무원 도덕적 해이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청구의 건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많이 실추되는 일이 마스크 등에 보도된 바가 있었으며 이후 구청에서 신속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 등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함</p>	<p>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련 윤리교육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효율 강화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초과근무 보상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할 것</p>
6	“	김기중	<p>병의원 및 약국에서 작성한 자을 점검표로 자체 점검한 것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문 제점 및 한계점이 내제하고 있음</p>	<p>향후 상급기관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 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단 속(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진 한 부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7	“	고기관	<p>각종 위원회가 개최횟수 대 비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위 원회 구성 또한 중복된 인 원이 위촉된 사례가 많음</p>	<p>예산배정 시에는 다수의 개최 일수를 산출하고 있으나 실질적 운영 횟수는 1~2개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위 원회가 50%미만의 개최 실적을 보이 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인이 다수 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위원 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8	“	고기관	<p>부서별 연 1회, 2회 부과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부 정확한 예산운영 및 시효결 손처리 소홀</p>	<p>시효결손 처리를 일정기간(분기별)을 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산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징수하 지 못할 가상의 예산을 수입에 산출 함으로써 명확한 예산 운영상에 문제 점이 있어 앞으로 각 부서별 시효결 손 처리를 미루지 않고 시효결손(만 5년) 일정을 제대로 처리하여 예산산 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 완할 것</p>

9	11.26	고기관	공시지가 산정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출	공시지가 산출시 현장실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축과와 지적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0	“	고기관	2006년도 수의계약 총 850건(공사 363, 물품 363, 용역 124) 중 특정 1개 업체가 최고 45건 계약, 10건 이상 4개 업체, 3건 이상 42개 업체이며, 2007년도는 총 705건(공사 187, 물품 394, 용역 124) 중 특정 1개 업체가 42건 계약, 10건 이상이 6개 업체, 3건 이상 62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 함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많으므로 특수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다수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	고기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총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각 양각색으로 편리에 따른 유권해석을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불참자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구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역특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하는 운영에 모순이 있으며 당연직 고문 등 위원표기 불일치	주민자치위원회 총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개최 시 참석여부에 대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각 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동별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되며, 총원 구성을 할 때 당연직 고문 및 위원 표기방법에 대한 서류(행정양식)를 통일하여 운영 할 것

12	11.26	윤동규	<p>세외수입 체납금이 9월 30일 현재 약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27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p>	<p>시호결손 처리 전 일부 탕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회수토록 하고, 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지속적 발생 건은 불납결손 처리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p>
13	“	윤동규	<p>위원회 심의 시 각 단체의 사업 타당성과 사업계획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조례에 정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단체별로 심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심의위원 서명 미필로 향후 문제 발생시 회의록으로써 효력과 가치가 없음</p>	<p>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후 정산 및 회계처리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환수조치 할 것</p>
14	“	윤동규	<p>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 받고도 추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의 활용이 미흡함</p>	<p>소송 건수가 2005년 118건, 2006년 126건, 2007년 1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송 건수 최소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특히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소취하시 동의하지 말고 대응하여 소포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 등 집행 시에는 충분하고 친절한 홍보가 필요 함</p>
15	“	윤준용	<p>현재 구청 내 구내식당의 영양사 부재로 구청 공무원 및 식당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건강이 우려됨</p>	<p>구청 공무원의 식사를 책임져야 할 구내식당 이 영양사의 부재로 식당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공무원 및 식당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건강이 우려되는바 빠른 시일내에 영양사를 유치하기 바람</p>

16	11.26	윤준용	예산이 없음(부족)으로 인하여 일반감사관 교육이 미 실시되고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등 구민감사관 운영 소홀	일반감사관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이 없으며, 일반감사관의 참여도 또한 3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여도가 저조하고 구민감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함
17	“	윤준용	자율방법 예산에 대한 정산 시 허위 영수 증 첨부 등 문제점이 있음	지원예산 정산 시 첨부된 간이 영수증의 필적 이 동일인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카드로 영수증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8	“	심용진	관급공사 OK시스템 구민감사요원 편성 및 운영이 미 숙하고 일반감사요원에 대한 운영이 미숙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전문감사요원은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1조 2 제1항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 또는 6급 이상의 퇴직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를 13명으로 위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박00감사관은 연 30회를 활동하였고 그외 8명은 평균 3회 특히 4명은 위촉 후 단 1회도 참여 실적이 없는 바 이는 업무 효율이나 감사관의 편중업무가 발생되어 감사 고유의 업무에 주된 역할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각 동에 1명으로 위촉된 22명의 주민감사관은 연중 단 1명이 1회만 활동하는 등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함

19	11.26	심용진	<p>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편성이 부적합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개선이 필요 함</p>	<p>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편성은 선출직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미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영등포2동과 당산1동 등 일부 동에서는 위원회 참석 실적을 높이고자 불참자의 서명을 허위로 서명, 날인하여 보상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출석한 위원에게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20	“	심용진	<p>구 청사 외벽 타일공사의 예산편성 시 세부공사 내역이 미비하고 공사비 지급이원화의 문제점 개선</p>	<p>당초 예산 편성시 청사외벽 타일 교체공사 등의 명목으로 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외벽 타일공사는 18%에 불과한 1천 6백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8%인 7천만원은 세부사업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민원여권과 환기장치 설치공사에 3천여만원이 집행되는 등 의결기관과의 사업집행이 불일치하고 청사타일 집행액이 같은 부분의 공사임에도 공사 타당성 견적비 5백만원과 본 공사비 1천 1백여만원 등으로 이원화 되어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 함</p>

21	11.27 (화)	고기관	<p>노인케어센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추진 소홀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p>	<p>공사계약 과정 준공일정이 (연세건설 자금사정 및 공사비 압류),(하도급업체 공사중지) 등 1차, 2차 공기 연기로 인하여 2005.12.23~2007.5.30 일로 되어 있는 바 아직까지 공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약 4억5천만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징수 방안이 계획이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아 자칫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특별대책을 세우기 바람</p>
22	“	고기관	<p>고객만족도 평가시 4주간 홈페이지 299건, 구청민원인 111 건 등 총 400여건의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평가 방법이 미비하여 만족도 평가결과 불만족하다고 생각 됨</p>	<p>홈페이지 및 현장방문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평가를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1~2명 참여, 3명 참여 등 10명미만 참여가 5개 부서에 이르러 만족도 조사에 객관성을 나타내지 못한바 추후에는 각 부서별 평가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접 부서별로 분류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항목이 총 15개로 구성되어 시간 지연에 따라 참여도를 많이 높이지 못하고 있어 4주간의 기간을 2주간 간격으로 항목을 7~8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면 시간지연을 해소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 됨</p>

23	11.27	고기관	문래1동사무소 건립시 기부 체납 협약 미 이행	문래1동사무소가 한국자산 신탁주식 회사와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방법을 명기하였지만 2007. 8.31일 준공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등기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4	“	고기관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전 직원들에게 균등한 보 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	연가 사용 일수를 제시하고 연가보상 비 지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 데 연가를 사용한 직원과 사용하지 않고 보상비를 받는 직원과의 차별화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방안을 마 련할 것
25	“	심용진	창업지원센터 내부시설 공 사 업체 선정 방법 미비로 입주업체 선정의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용 차량과 기타 집기류 구입 시 세부내역을 의결기관과 사전에 예시 부 족	창업지원센터 내부 시설공사가 약 7 억원의 사업계획으로 당연히 입찰견 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공사 여건상의 이유로 특 정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창업지원을 위 해 건립된 벤처타운 입주자가 총 24 개 업체중 관내 주민은 4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타 지 역에 거주하고 있어 당초 계획에 어 긋나고 있어 시정을 요하며, 지역경제 과의 신축이전에 대비하여 장비구입 비 약 2억 9천만원을 편성 후 2천만 원이 넘는 차량구입과 신제품 컴퓨터 구입비 2천만원 등 상당부분의 구입 시에는 자산취득의 목적으로 의결기 관에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장비구입 비 명목으로 일괄 구입 하였는바 차 후 시정하기 바람

26	11.27	심용진	<p>구민만족도 주민 여론조사 시 한국리서치에 위탁 의뢰한 전화 여론조사 개선이 필요</p>	<p>구민만족도 및 구정운영 방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전화응답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의뢰 하였는바 응답방법으로 귀하께서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별, 나이, 학력, 월수입, 주거현황 등 무려 15가지의 항목으로 통화시간이 약 20분이 소요하는 무리한 질의응답을 요하고 있어 이에 응답하는 주민의 호응도가 반감으로 이어져 얼마만큼의 성실한 답변이 될지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많은 양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면 전화 응답이 아닌 서면 답변으로 조사해야 예산절감이나 정확한 답변에도 확신이 있어 개선을 요함</p>
27	“	심용진	<p>자매도시 문화체험 방문 행사 시 예산에 비해 실적이 미흡 함</p>	<p>자매도시 어린이 문화체험은 고성군과 영암군,청양군 등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로 어린이들의 상호 교류로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환경을 체험해 보는 현장학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지만 그 실적을 분석해보면 우리구의 방문 어린이는 3개군에서 평균 37명인 112명으로 좋은 실적을 올렸지만 우리구에서 자매도시 방문은 1개군 평균 27명인 81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당초의 예산규모로 보아 사업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차후 실적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함</p>

28	11.27	심용진	U dream 홍보물을 제작 후 관련 기관에 배부를 소홀히 함	U dream 영등포의 홍보물에 많은 정성을 기울려 제작을 하여 널리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부토록 할 것이며, 우편물 포장 봉투가 조잡하므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영등포의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9	“	김종태	국, 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및 부과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요구 됨	국, 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제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기 바람
30	“	김종태	우리은행과 구 금고 업무가 계약 체결되어 있으나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5년간 금고업무 약정이 우리은행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장기 예금이 가능하고 입출금이 잦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타 은행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계약 체결을 재검토
31	“	박남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허가처리 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 함	향후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2	11.27	김기중	<p>지난 1차 정례회 회의 시 상시적 교복은행 운영사업 추진을 적극 제안했으나, 여러가지 현 실정에 부합되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을 요구함.</p>	<p>우리 구에서 동·하절기 교복은행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교복비 경감은 물론 자원 재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여러 학교 교복이 혼재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복은행 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p>
33	“	심용진	<p>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시 사법경찰관 미 동행으로 민간단속 요원의 업무범위 이탈</p>	<p>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경, 관, 민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사법권이 없는 관, 민 단속으로는 단속업무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하며, 민간단속 요원의 업무가 과잉 단속되어 당초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이 필요 함</p>
34	“	심용진	<p>음식점내 자동판매의 점검이 없으므로 위생에 문제가 있음</p>	<p>현재 지도점검하고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 점검은 영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1,002개의 업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목적으로 설치된 음식점소내의 자동판매기 1,000개는 점검(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